



# 사장님! 지금, 시작해보세요!

2017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



기관명

연락처



고용노동부

# 사장님! 지금, 시작해보세요!

2017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



## Contents

고용창출장려금	01.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03
	0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04
	03. 청년내일채움공제	05
	04.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06
	05.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07
	06. 전문인력 고용 지원	08
	07. 고용촉진장려금	09
고용안정장려금	08.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11
	0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지원	12
	10.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13
	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4
	12. 정규직 전환 지원	15
고용유지지원금	13. 고용유지지원금	17
직업능력 개발	14. 일학습병행제	20
	15. 능력중심 채용 지원	21
고용문화 개선	16. 일·가정 양립 캠페인	23
	17. 일터혁신 컨설팅	24



##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기업 고용상황	구체적인 유형	지원 제도	쪽수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할 계획이 있다	① 근로시간이 짧은(주 15~30시간 근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3
	② 장시간근로 개선으로 근로자 증가가 예상된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4
	③ 청년을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장기근속 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④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고용하려고 한다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6
	⑤ 성장유망업종이나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된다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7
	⑥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전문인력 고용 지원	8
	⑦ 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9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희망한다	⑧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주 15~30시간 근로)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11
	⑨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
	⑩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13
	⑪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육아 휴직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 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4
	⑪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⑪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	15
	⑫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고용을 감소 시킬만큼 기업이 어렵다	⑬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훈련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는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17
인재 채용이나 훈련에 관심이 있다	⑭ 청년 등을 채용해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시키고 싶다	일학습병행제	20
	⑮ 우리 기업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	능력중심채용 지원	21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만들고 싶다	⑯ 일과 가정(삶)의 양립을 위한 실천 캠페인에 참여하여 일·가정 양립 일터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싶다	일·가정 양립 캠페인	23
	⑰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일터혁신 컨설팅	24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창출 장려금

1.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5.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6. 전문인력 고용 지원
7. 고용촉진장려금

##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 ■ 지원요건

- ① 무기계약 체결
-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구분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설비투자비 용자 → 모든 기업
- 설비투자비 지원,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구분	지원 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설비투자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 ※ 총투자비의 1/3 범위 내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
- 설비투자비 용자 : 고용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시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임금감소근로자비 임금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보전금액의 80% 한도로 지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청년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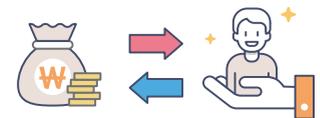
### ■ 지원내용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 지원

**기업**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 각 사업별로 지원금 지원

청년취업인턴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이수자 채용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 ■ 지원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 ■ 지원요건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함께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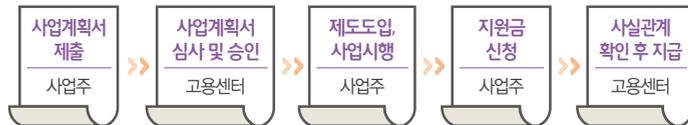
#### ·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

- 임금피크제 도입: 피크임금 대비 감액율 5% 이상인 경우
- 임금체계 개편 등: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개편하거나,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 노력

###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임금피크제 지원금

청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임금 감액된 날부터 '18. 12. 31.까지 지급)

##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①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②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 지원내용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성장유망업종	180만원	720만원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 고용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력·학력·자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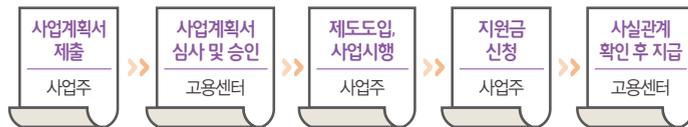
###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경영·인사·노무·마케팅', '제품·기술 개발', '안전·보건', '정보통신' 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지원내용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고용촉진장려금

### ■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 지원내용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구인신청·인증 이후 '취업희망풀'의 인재정보 검색 및 입사제안 가능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제출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고용안정 장려금

1.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 지원
3.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5. 정규직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학업(자기계발)·육아·학업·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③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 신청

### ■ 지원내용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 •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보전확인 후 사후지원)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월 최대 24만원
-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월 최대 40만원)

####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

#### • 대체인력 인건비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인건비의 80% 한도)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제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 · 유연근무제도의 내용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주

### ■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 지원

지원내용	종류	지원금 용도
직접 지원 최대 2천만원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 시스템</li> <li>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li> <li>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li> <li>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li> </ul>
융자 지원 최대 4천만원	설비·장비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li> <li>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li> </ul>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 **직접지원** 총 투자금액의 25%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융자지원**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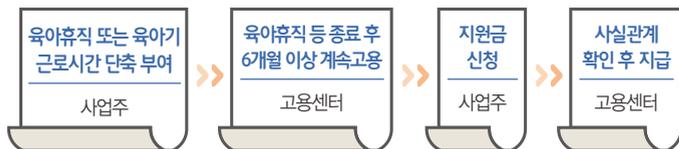
### ■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li> </ul>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제출

## 정규직 전환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② 정규직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③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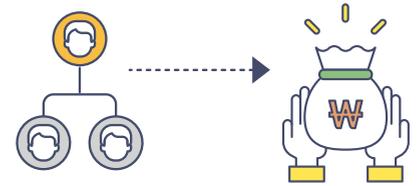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 어떤 제도인가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훈련,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 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일 상한액 50,000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만원),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 휴업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대규모기업 2/3~3/4)

####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3/4)과 훈련비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대규모기업 2/3~3/4)

#### • 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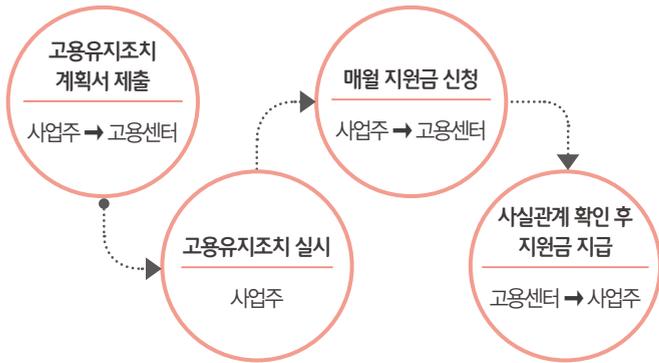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대규모기업 2/3~3/4)

####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 ■ 사업추진체계

### • 휴업·훈련·휴직 고용유지지원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계획서 제출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 지원



## 직업능력 개발

1. 일학습병행제
2. 능력중심 채용 지원

## 일학습병행제

### ■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제도입니다.

**기업**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

**학생**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우므로써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정착 가능

### ■ 지원대상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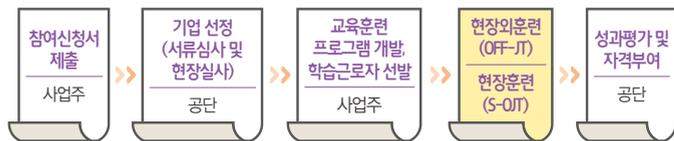
※ 우수기술 기업, 관계부처 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인증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 ■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지원

-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원
-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 지원
- 훈련비(S-OJT, OFF-JT) 및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월 40만원 한도)
- 기업현장교사(400~1,600만원 한도) 및 HRD 담당자(300만원 한도) 수당 지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www.bizhrd.net)

오프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능력중심 채용 지원

### ■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이 해당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NCS\*를 활용하여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 지원대상

직무중심 채용을 원하는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 '16년까지 230개 공공기관 및 800여개 민간기업에 지원(누적)

### ■ 지원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기업의 직무를 분석 → 공정한 채용 평가도구 개발 지원

#### 직무분석 및 NCS Mapping

기관 인제상, 채용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검토

\*필요능력: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 채용도구 개발

직무와 관련된 서류·필기·면접\* 등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개발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필기(직무능력평가), 면접(경험·상황·토론·발표 면접)으로 구분

#### 평가척도 개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필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출 및 평가척도표 개발

### ■ 신청방법

온라인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능력중심채용 사이트(onspec.ncs.go.kr)

오프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팀(052-714-8770)

기업·근로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고용문화 정착 지원



## 고용문화 개선

1. 일가양득 캠페인
2. 일터혁신 컨설팅

## 일가양득 캠페인

### ■ 어떤 제도인가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5분야를 선정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근로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 · 일가양득 핵심 5분야

핵심분야	세부 프로그램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교대제 개편, 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회식·야근 줄이기	가정의 날 정시퇴근제 등
육아부담 나누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실설치 등
자기계발 및 일찬휴가 지원	동호회 지원, 연차사용 촉진, 안식년 등

### ■ 지원대상

일가양득 핵심 5분야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 ■ 지원내용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가양득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오프라인**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부서에 신청서 제출

## 일터혁신 컨설팅

### ■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부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을 진단·분석하는 제도입니다.

### ■ 주요 컨설팅 분야는?

#### •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 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

※ 관련제도: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 • 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및 신규 도입·운영 방안

※ 관련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전환, 신규창출)

#### • 일·가정 양립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설계 지원

### 그 외 컨설팅 영역들

• 임금체계 개선: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

관련제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지원

• 평가체계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 평생학습체계 구축: 인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위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

관련제도: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학습조직화 지원 등 연계

• 노사파트너십 구축: 전략과 연계한 노사관계 전략 수립 등 신뢰에 기반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관련제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직무순환제, 작업시스템 개편 등 생산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부여, 현장 책임경영 구현 지원

관련제도: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학습조직화 지원



• 비정규직고용 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 관리체계 수립

관련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 장년고용안정: 장년근로시간 단축, 장년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멘토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관련제도: 고령자고용연장지원

• 기초컨설팅: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 및 자문 제공

###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다만,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은 우선지원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기업, 일·가정 양립 컨설팅은 50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 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 ■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오프라인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02-6021-1222, 1167, 1170)

# 사장님! 지금, 시작해보세요!

2017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

